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99
----------	-------

발의연월일 : 2025. 8. 5.

발 의 자 : 박정하 · 박덕흠 · 주호영
김재섭 · 황명선 · 엄태영
서일준 · 한지아 · 박정훈
김상훈 · 조은희 · 박상웅
윤한홍 · 김위상 · 김용태
서범수 · 김태호 의원
(17인)

제안이유

오늘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각종 스마트기기의 등
장 등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스포츠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나 스포츠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
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조정 등을
규정한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여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이 포함된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분석·보완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른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고, 스포츠지능정

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체육단체등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복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해당 스포츠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재난·재해복구체계에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스포츠정보”란 스포츠와 관련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장·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3. “스포츠정보자원”이란 스포츠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유선·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기술·인력 등 스포츠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포츠지능정보화”란 스포츠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

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스포츠정보시스템”이란 스포츠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에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고도화·효율화하고,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스포츠지능정보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지능정보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평성·편의성·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지능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인력·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단체 등의 책임) 스포츠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등”이라 한다)는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반 구축과 관련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지능정보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6조(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계획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반의 구축 및 고도화
3. 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4. 스포츠지능정보화 및 스포츠정보의 연계·활용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5. 스포츠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6. 스포츠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7. 스포츠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
8. 스포츠 학술연구·행정 등 분야의 디지털화
9. 스포츠 분야의 정보보호 및 정보격차 해소
10. 그 밖에 스포츠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등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 성과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분석·보완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려는 체육단체등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성과의 분석·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

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조정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과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 및 사업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스포츠행정 전산화 업무의 지원
 3. 소속 직원의 지능정보화역량 강화 지원
 4.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스포츠지

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등의 장은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협의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능정보화기술의 도입·활용이나 스포츠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에 따른 스포츠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2. 제12조에 따른 스포츠정보자원의 운용실태 조사 지원
3. 제13조에 따른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4. 제14조에 따른 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스포츠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체육단체등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등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라 통합한 스포츠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스포츠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스포츠정보자원의 운용실태 조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

스포츠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단체등에 대한 스포츠정보자원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복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체육단체등의 장은 스포츠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재난·재해복구체계에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복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스포츠정보 재난·재해복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포츠정보 재난·재해복구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보급·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등을 대상으로 스포츠지능정보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
3. 제11조에 따른 스포츠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4. 제14조에 따른 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